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대변인실 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대검찰청

보도자료
2024. 10. 2.(수)

자료문의 : 형사정책담당관실
전화번호 : 02-3480-2922
주책임자 : 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

대검찰청, 『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』를 주제로 '24년 제3회 '형사법포럼' 개최

- 대검찰청은 '24. 10. 2.(수) '24년 제3회 형사법포럼'을 개최하여, 『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』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.
 - '21. 1.부터 검경 수사권조정 및 소위 '검수완박' 법안이 시행되면서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70여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.
 - 하지만 충분한 협의와 숙고 없이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됨으로써 수사·재판 절차가 지연되고,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약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 - 이에 '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, 올바른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'하기 위하여 이번 형사법포럼의 주제를 「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」로 선정하였습니다.
- 제1부에서는 '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변화한 수사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'이라는 주제로 수사지연, 수사기관 사이의 불명확한 역할 분담, 복잡한 절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등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실무상 문제사례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.
- 제2부에서는 '해외 주요국가의 검찰제도'라는 주제로 OECD 주요국가, 중국, 유럽검찰청(EPPO), 국제형사재판소(ICC)의 검찰제도 등 수사·기소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해외 주요국가들의 검찰제도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.
- 검찰은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.

I 행사 개요

● 일시 및 장소

- '24. 10. 2.(수) 15:00~18:00, 대검찰청 별관 4층 예그리나홀

● 참석자

- 교수, 변호사, 법학전문대학원생, 검찰 구성원 등 250여 명

● 프로그램

◆ 제1부 <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변화한 수사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>

사회 : 김희균 교수 (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발제 : 정혜승 검사 (서울동부지방검찰청)

토론 : 김예원 변호사 (장애인권법센터)

김종민 변호사 (S&L 파트너스)

◆ 제2부 <해외 주요국가의 검찰제도>

사회 : 이근우 교수 (가천대학교 법학과)

발제 : ① OECD 주요국가의 검찰제도

- 김성룡 교수 (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② 중국의 검찰제도

- 장지화 중국변호사 (김앤장 법률사무소)

③ 유럽검찰청과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제도

- 박경규 연구위원 (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)

※ 「형사법포럼」은 형사사법절차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연구·토론·논의를 위해 대검찰청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로 최근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음

- '24. 7. 19. 2024년 제2회 '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: 세계화·디지털화·위험사회'

- '24. 3. 29. 2024년 제1회 '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'

- '23. 12. 8. 2023년 제4회 '체포·구속제도에 대한 고찰'

- '23. 9. 8. 2023년 제3회 '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'

- '23. 6. 30. 2023년 제2회 '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'

- '23. 3. 31. 2023년 제1회 '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'

■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변화한 수사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(정혜승 검사)

-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은 이른바 ‘정치검찰’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%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되었음
-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이 시행되고 3년이 지난 현재, 아래와 같은 형사사법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
 - ① 미로찾기 같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장벽이 생겼고, 사건 관리에 있어 고비용·저효율 문제가 발생함
 - ② 경찰의 불송치·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하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할 권한이 없고, 재수사요청, 송치요구 및 시정조치요구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짐
 - ③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후 경찰이 검사의 요구에 기속되지 않는 보완수사요구 절차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검경 간에 소위 ‘사건 핑퐁’이 양산될 수밖에 없음
 - ④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하여 아동·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는 폐해 발생
-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 문제는 절차의 간이화·효율화,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, 경찰의 수사 책임성 제고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

<토론자 의견>

○ 김예원 변호사(장애인권법센터)

-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에 따른 검경의 합리적 분업체계 붕괴로 고비용·저효율의 수사시스템으로 변화하였고, 수사 지연과 검경간의 '사건 핑퐁'이 심각하게 되었으며, 특히 장애인·아동 등 취약 계층 피해자에게 대한 수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음

○ 김종민 변호사(S&L 파트너스)

- 수사권조정에 따라 형사사법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정상궤도를 이탈한지 오래 되었고 형사사법정의가 실종되었으며, 범죄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사이 범죄자 천국이 되어 버렸는데, 이러한 수사권조정은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참사임
- 수사권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, 체계적인 미제 관리, 근본적 조직개편 등 검찰 수사 실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

■ 해외 주요국가의 검찰제도

● OECD 주요국가의 검찰제도(김성룡 교수)

- OECD 38개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모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3개국을 합하여 총 34개국으로, 약 90%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함
- 최근 영미법계 국가(영국, 뉴질랜드)도 독일의 중점수사청을 모델로 SFO(중대비리수사청)를 설치하여 검사에게 중요범죄의 수사·기소를 책임지게 하는 등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도입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함
- 우리나라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후 대륙법계 국가 중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음

● 중국의 검찰제도(장지화 중국변호사)

- 중국은 헌법에서 검찰(인민검찰원)을 '국가의 법률감독기관'으로서 법원과 같이 사법기관으로 규정하여 독립성을 부여하였고, 검사는 수사권, 기소권, 공소유지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

※ 다만,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구체적인 범죄별(부패범죄, 불법구금·수색죄, 직권남용죄 등)로 특정되어 있음

- 중국 검찰은 공안의 사건 송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공안의 불입건 등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대하여 공안을 감독하지만, 공안도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보유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검찰제도가 운영되고 있음

● 유럽검찰청과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제도(박경규 연구위원)

- 유럽검찰청(EPPD)과 국제형사재판소(ICC) 검찰국은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, 소속 검사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, 직접 수사하며, 기소여부를 결정함
 - ※ 특히,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은 ‘관할·보충성·협력부’, ‘수사부’, ‘기소부’가 공동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·기소·공소유지를 수행하고,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하여 공동수사팀에 참여하는 시니어 공판검사가 수사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함
- 유럽검찰청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보듯이 ‘수사는 종국적으로 기소 여부 판단 및 재판에서의 공소유지를 위한 것’이라는 점에서 수사·기소·공소유지의 융합이 ‘국제적인 기준’이라고 할 수 있음